

입법예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12. 3

행 정 안 전 부

1. 제정이유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39호, 2012.2.22. 공포, 2012.8.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방법 등(안 제2조)

- 1) 특별시장등은 전수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 5년 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
- 2) 보도가 없는 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제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 실태,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등을 조사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등(안 제3~6조)

- 1)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안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2) 기본계획은 계획 시작년도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

다.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7조)

- 1) 특별시장등은 매년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가능
- 2) 행안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은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등에게 연차별 실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라.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절차 등(안 제8~10조)

- 1)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을 게시관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2) 특별시장등은 보행 안전·편리·쾌적성의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장관 및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
- 3) 특별시장등은 외부 전문가 7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속 직원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음

마.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 기준(안 제11조, 별표 1)

- 1) 보행자전용길 지정시 보전자원의 분포, 자연재해 가능성 등을 고려
- 2) 시설 설치시 지역특색, 자연경관 등을 고려, 교통안내시설 설치

바.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사업, 범위 등(안 제12~13조, 별표 2)

-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등을 대상사업으로 추가
- 2) 각 대상사업별 사업의 범위와 제출시기를 정함

※ 부지면적 5만㎡ 이상 10만㎡ 미만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에 제출

사. 공공시설물등통합설치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4조)

- 1) 도로 관리청은 소속 공무원, 경찰청 또는 경찰서 공무원,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
- 2) 공공시설물 통합설치 결정, 소요비용의 부담, 각 기관의 협조 사항 등을 협의·조정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준 등(안 제15조, 별표 3)

1)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게 차마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자동차, 건설기계 : 5만원 등)

2)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고, 증거자료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3.13~22)

라. 기 타 : 없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자길 현황
2. 보도가 없는 도로 현황(자동차전용도로 제외)
3.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4.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정비 실태
5.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실태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정비 실태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특별시장등은 다른 법령에서 실태조사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⑤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절차 등)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한 경우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안 제출하기 전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해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2인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 1인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보행 관련 계획” 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2.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조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7조제8항 단서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별 사업비규모를 100분의 5이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투자재원 확보 등에 관한 사유로 기본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4. 기타 기본계획 운영상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입안권자가 경미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등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10월 31일 이후에는 실행계획

을 변경할 수 없다.

⑤ 법 제8조제1항 후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교통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등)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을 특별시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행환경개선사업별 사업비 규모를 100분의 5이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기타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상의 보편·타당한 사항으로서 입안권

자가 경미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④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역에 관한 사업들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효과
2. 보행 안전·편리·쾌적성 등에 대한 개선 정도
3. 해당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4. 보행환경개선지구를 통행하는 주민(보행자 및 운전자)이 느끼는 만족도
5.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 평가의 기본방향
2. 개선사업 평가 대상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개선사업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개선사업 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 ① 특별시장등은 제13조에 따른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되, 위원 전원을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대상이 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 특별시장등은 평가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등이 정한다.

제11조(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 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제외)
2. 공원, 유원지
3.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시기 등)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구간별로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1명
2. 해당 구간별 관계 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경감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 한국전력,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해당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 시설물 관리기관의 부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1명

4. 해당 지역 주민 중 통합설치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1명

③ 협의회는 의장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도로 관리청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공공시설물등의 통합설치 결정

2. 공공시설물등의 통합설치에 따른 소요비용의 부담

3. 각 기관별 협조사항

4. 공공시설물등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⑤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3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단속대장(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

는 과태료 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차를 촬영한 사진 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고, 증거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기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연도의 익년도부터 시작되도록 한다.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 기준

1. 보행자 전용길의 노선 및 구조

- 가. 보행자 전용길을 조성하는 경우에 보전해야하는 자원이 분포하는 구역은 노선 선정에 있어 주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우회하는 노선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나. 보행자 전용길 조성으로 인해 주변 지형의 변형으로 인한 낙석,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보행자전용길의 유효폭

- (1) 보행자전용길의 유효폭은 장애인용 의자차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2.0m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지형상 불가능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m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 (2) 유효폭 확보를 위해 조명, 안내시설 등은 일정 공간 내에 일렬로 배치 관리하여 보행자 전용길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보행공간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나. 포장

- (1) 일반 보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의자차 등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구간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디자인과 생태계를 배려한 투수성 포장 등을 도입할 수 있다.
- (2) 보행자전용길과 다른 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거 겸용도로 등)와 연계되는 구간 등은 포장의 패턴과 종류를 다르게 하여 공간변화를 인지할 수 있어야하며 투수성 포장 등을 도입할 수 있다.
- (3) 포장재료를 선택함에 있어 주변에 생태 서식지나 주거지가 인접할 경우 포장재료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안내시설

- (1) 해당 보행자전용길의 특성에 맞는 로고나 색채, 문양 등을 도안하여 모든 안내시설 및 편의시설에 통일감 있게 사용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한다.
- (2) 이정표, 안내표지판 등 모든 안내시설은 주변의 자연경관을 고려해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해야 하며, 보행통로에는 우측보행 표시를 하여야 한다.
- (3) 사다리꼴구조물의 높이는 보도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고,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는 차축의 길이를 고려하여 2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대중교통정보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 가. 보행우선구역 안에서는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의 교통수단, 600미터 이내의 주요 시설물, 1.2킬로미터 이내의 여객시설 그 밖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보행자안내표지판은 보행우선구역 안의 주요교차로와 보도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 다. 보행자안내표지판에 포함되는 지도에는 위치 및 방향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 라. 보행자안내표지판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시기,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

대상사업 범위 및 규모	제출시기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10만㎡ 미만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3만㎡ 이상 5㎡ 미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제외) - 총길이 2km 이상인 신설노선 나) 공원 - 부지면적 15만㎡ 이상 30만㎡ 미만 다) 유원지 - 부지면적 8만㎡ 이상 15만㎡ 미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10만㎡ 미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10만㎡ 미만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사업면적 15만㎡ 이상 25만㎡ 미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차마의 진입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 5만원(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1), 2)에 해당되는 경우) - 3만원(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3), 4), 5)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